

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] <신설 2018. 7. 3.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6조제1항 제1호	50	100	200
나. 법 제8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	법 제16조제1항 제2호	100	200	300

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한 경우				
다.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	법 제16조제1항 제3호	100	200	300
라.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 출입한 경우	법 제16조제1항 제4호	100	200	300
마. 법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6조제1항 제5호	150	250	300